

정 관

현 대 외 국 인 학 교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단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및 입학자격을 갖춘 한국인 자녀들에게 유치원·초등·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(변경: 2021년 1월 26일)

제 2 조(명칭) 이 단체는 비영리단체 현대외국인학교(이하 단체라 한다)라 한다.

제 3 조(설치학교) 이 단체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설치 경영한다.

1. Hyundai Foreign School Early Year Center
2. Hyundai Foreign School Primary School
3. Hyundai Foreign School Middle School

제 4 조(주소)이 단체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 1 길 30 한마음회관에 둔다.(변경: 2021년 1월 26일)

제 5 조(정관의 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 제 2 장 자산과 회계

### 제 1 절 자 산

제 6 조(자산의 구분)

- ① 이 단체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

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제 2 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#### 제 7 조(재산의 관리)

①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8 조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단체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## 제 2 절 회 계

##### 제 9 조(예산의 집행)

① 학교의 예산은 상임이사가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학교 이사회가 심의.의결하고 상임이사가 집행한다.

제 10 조(수입의 사용) 학교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한다.(변경: 2021 년 4 월 22 일)

##### 제 11 조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

① 학교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 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다.(변경: 2021 년 4 월 22 일)

② 학교는 결산서류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 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한다.(변경: 2021 년 4 월 22 일)

제 12 조(세계 잉여금의 처리) 이 단체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제 13 조(회계년도) 이 단체의 회계년도는 1 월 1 일부터 당해년 12 월말일까지로 한다.

### 제 3 장 기 관

#### 제 1 절 임 원

제 14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이사: 5 인 (이사장 1 인을 포함한다)

제 15 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장은 이사로서 교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하며 임기는 교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.
2. 상임이사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.
3. 현대중공업 총무팀 및 재무분석팀의 팀장 각 1 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.(변경: 2021 년 1 월 26 일)

제 16 조(임원의 선임방법)

-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.
-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-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 개월전에 하여야 한다

제 17 조(임원 선임의 제한)

- ① 이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 1 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라야 하며,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 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- 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.
  - 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.
  - 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.

제 18 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)

-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.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 19 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.

제 20 조(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)
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21 조(상임이사) 상임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·학사·재무·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, 학사 관련 업무는 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(변경: 2021년 1월 26일)
2. 교장, 교사 및 행정 직원의 임명, 채용, 해고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결정을 이행한다.
3. 분기별 1회 학교 운영 현황 및 재무·회계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 제 2절 이사회

제 22 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  1.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3. 학교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5.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6.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  7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 23 조(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 24 조(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이 학교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

#### 제 25 조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③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,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.

제 25 조의 2(회의록의 작성)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5 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에게 송부한다.

#### 제 26 조(이사회 소집 특례)

-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반수이상인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7 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해 산

제 27 조(해산)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28 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·지방단체 또는 학교법인 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

(변경: 2021 년 4 월 22 일)

제 29 조(청산인) 이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5 장 교 직 원

### 제 1 절 교원

제 30 조(교원의 채용, 임면, 처우) 교장, 교사, 보조교사 등 교원의 채용, 임면, 처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 62 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의 규정 및 초·중등교육법 제 60 조 2 외국인학교 규정에 의거, 현대외국인학교 교사 계약서(Teaching Service Contract)에 따른다.

### 제 2 절 사무직원

#### 제 31 조(자격)

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(이하 “일반직원” 이라 한다)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

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- 7. 이 단체와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 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관리운영직 및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 기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  -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 한다.

#### 제 32 조(임용)

-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, 승진, 근속승진, 승급, 전직, 전보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(이하 "임용"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,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,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,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
제 33 조(복무, 보수, 신분보장, 정년, 징계) 일반직원의 복무, 보수, 신분보장, 정년,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 62 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의 규정 및 초·중등교육법 제 60 조 2 외국인학교 규정에 의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
## 제 6 장 직 제

### 제 1 절 단체

#### 제 34 조(단체 사무조직)

- ① 이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 사무과를 두며 실장은 과장

이상으로 보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제 2 절 현대외국인학교

제 35 조(교장 등)

① 외국인학교에 교장 1 인과 교감 1 인을 둔다.

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
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.

## 제 3 절 정 원

제 36 조(정원) 이 단체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.

## 제 7 장 보 칙

제 37 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38 조(설립당초의 임원) 이 단체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소
이 사 장	이 종 희	1963. 10. 18	울산시 동구 미포아파트 9 동 5 호
이 사	김 응 수	1964. 10. 3	울산시 동구 봉수로 250 103 동 504 호
"	이 철 현	1969. 3. 12	울산시 동구 봉수로 450 103 동 1406 호
"	장 혁 진	1972. 1. 11	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33 109 동 201 호
"	Tony Blacklock	1962. 2. 19	울산시 동구 서부동 233 번지

- 부 칙 -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현대외국인학교 일반직원 정원		
총	계	6명
교육행정직	계	4명
실장		1명
일반행정		3명
관리운영직	계	2명
시설관리		2명